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셀프 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

대한의사협회 의무팀 / 2025. 1. 24.

'의사 본인 투약·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대상 약물로 '프로포폴'이 우선 지정될 예정(개정 진행 중, 2025.1.24. 기준)으로 개정안의 최종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관련 안내문을 배포드리오니, 마약류 자가 처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처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개정법을 시행 전 실태파악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보고받은 투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인이 본인에게 처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2024년 1월~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 4,883명, 의료기관 4,147개소

나. 의료기관 및 의료진 협조 사항 ;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안내

- (협조사항) 의료기관에서는 프로포폴의 자가 처방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음을 의료진에게 안내하고, 처방 시스템 및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자가 처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예방 및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투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프로포폴 처방 시스템 주의사항

- 프로포폴 자가 처방 시,
 - 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만 확인 가능하고,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가 처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의사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사후 점검을 통해 자가 처방 여부를 확인 가능하지만, 실시간 예방이나 경고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소속 의료진에게 관련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을 통한 보고 의무가 준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 위반 시 처분사항 및 관련 법령

- (향정신성의약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처분사항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u>의 벌금에 처한다.</p> <p>11. 제28조제1항 또는 <u>제30조제1항·제2항</u>을 위반하여 <u>향정신성의약품을</u>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p>

- ※ (참고) 상기 처분 외 행정처분 기준은 향후 총리령 개정과 함께 구체화될 예정임.